

담양군의회 공고 제2025 - 36호

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「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5. 8. 19.

담양군의회 의장



1. 조례명 : 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, 담양군의회 의 청렴성을 제고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(안 제4조의2)

-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속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

나. 기타 띄어쓰기 및 자구 정비

4. 입법예고 기간 : 2025. 8. 19. ~ 8. 24.(5일간)

5. 의견제출

-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
- 전화 : 061-380-3507~8(FAX 061-380-3590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화, FAX, 직접방문, 우편

6. 조례안 : 붙임 참조

□ 의견제출 서식

의견서		
1. 규칙안	담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	
2. 의견	관련조문	의견
3. 기타		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2025년 8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(전화 :) 성명 (서명 또는 인)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		

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”로 한다.

제4조의2의 제목 “(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)”을 “(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“경우 3개월 이내”를 “경우에”로, “월정수당의 40퍼센트, 3개월 이후는 20퍼센트를 지급한다”를 “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법원판결에 의하여”를 “법원 판결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00조제1항제3호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00조제1항제3호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여행하는 때에”를 “출장 가는 때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여행을 할”을 “출장을 갈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담양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	제1조(목적)	-----	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 -----
			-----	-----
			-----	-----
			-----	-----
			-----	-----
			-----	-----
제4조의2(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)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속 상태에 있는 경우 3개월 이내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40퍼센트, 3개월 이후는 20퍼센트를 지급한다. 다만, 의원이 법원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.		제4조의2(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) ①	-----	-----
			-----	경우에-----
			-----	월정수당
			-----	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-----
			-----	-----
			-----	법원 판결에 따라 -----
			-----	-----
			-----	-----
			-----	-----
			-----	-----
② 「지방자치법」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따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		② 「지방자치법」 제100조제1항제3호	-----	-----
			-----	-----
			-----	-----
			-----	-----
			-----	-----
			-----	-----
			-----	-----
			-----	-----

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,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.

1. ~ 3. (생략)

③ (생략)

제5조(여비 지급) 의원이 담양군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.

제6조(여비의 종류) ①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 여비는 운임(철도 운임, 선박 운임, 항공 운임, 자동차 운임), 일비, 숙박비, 식비로 구분한다.

② (생략)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여비 지급) -----

-- 출장 가는 때-----
-----.

제6조(여비의 종류) ① -----

----- 출장을 갈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